# 선박재활용법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24 발의연월일: 2024. 11. 20.

발 의 자:조경태·이헌승·서천호

곽규택 • 박상웅 • 김태호

정성국 • 유용원 • 엄태영

권영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2009. 5. 국제해사기구(IMO)는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사고 및 상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재활용협약을 채택하였음. 동 협약은 총톤수 500톤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이를 해체하는 선박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전주기 동안 보건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의무사항들을 담고 있음.

2023. 6. 26. 동 협약은 발효 요건인 비준국 15개국, 선복량 40퍼센트, 선박재활용실적 3퍼센트가 충족되었으며 이로부터 2년 후인 2025. 6. 26. 전 세계적으로 발효될 예정임.

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이사국으로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,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우리 나라 국적선박의 국제운항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, 선박해체 시에는 국제기준에 따라서 선박재활용시설에 적법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동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선박재활용협약의 본문, 부속서, 부록 및 결의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내법 제정을 통해서 반영함으로써 협약을 준 수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그 선박을 재활용하는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, 해양사고 수습의 목적으로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할 때는 적용하지 않도록 대상범위를 정함(안 제3조).
- 다. 선박의 경우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,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. 또한, 선박을 재활용하는 경우 인증받은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하여야 하며, 폐기물 등의 최소화 조치와 출입 및 작업안전 조치 등을 준수하도록 함(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).
- 라. 선박재활용시설의 경우 선박재활용시설 계획서를 갖추어 기준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, 승인받은 선박재활용 계획에 따라서

선박을 재활용하도록 함(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).

마.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이 법에 따라서 적합하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출입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명령 등을 하여 행정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20조).

## 선박재활용법안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선박"이란 「선박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(이하 "선박"이라 한다. 장비가 해체되거나 예인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- 2. "현존선"이란 신조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.
- 3. "신조선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.
  - 가. 2025년 6월 26일 이후에 선박 건조 계약이 이루어진 선박
  - 나. 건조 계약이 없는 경우, 용골거치나 이와 유사한 건조 단계가 2025년 12월 26일 이후에 있는 선박
  - 다. 2027년 12월 26일 이후에 인도가 이루어진 선박
- 4. "총톤수"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「선박법」 제 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하고, 그 밖의 경우에는 같

- 은 항 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.
- 5. "선박소유자"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사람을 말한다.
  가. 선주,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
  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
  한 용선자
  - 나. 선박재활용시설에 선박을 매매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만 선박을 소유하는 자
- 6. "유해물질"이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.
- 7. "유해물질목록"이란 선박 및 선박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.
- 8. "선박재활용"이란 유해물질에 주의하여 선박의 구성요소 및 재료를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보관 및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 별도의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추가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9. "선박재활용업자"란 선박재활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임차인을 포함하여 선박재활용시설의 소유자로부터 선박재활용에 대한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한 그 밖에 법인 또는 사람을 말한다.
- 10. "선박재활용시설"이란 선박재활용을 위한 장소, 작업장, 시설로 서 정해진 구역을 말한다.
- 11. "관할수역"이란 다음 각 목의 수역을 말한다.

- 가.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 제1조에 따른 영해
- 나.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 제3조에 따른 내수
- 다. 「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배 타적경제수역
- 12. "현장조사"란 인증심사 등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에 명시된 선박 재활용시설의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.
- 13. "유조선"은 「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」(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) 부속서 1에서 정의한 석유를 산적운반하는 유조선 또는 부속서 2에서 정의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는 유조선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「선박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그 선박을 재활용하려는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에서 수리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.
  - ② 대한민국 선박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(이하 "외국선박"이라 한다)이 대한민국 관할수역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경우, 이 법을 적용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,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, 제23조, 제25조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함 및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④ 이 법은 해양사고로 인하여 선박의 침몰 또는 좌초 등이 발생한 경우, 해양사고 수습의 목적으로 해당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선박재활용업자는 해당 선박 또는 선박 재활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유해물질을 포함한 물질을 수 거·처리하는 경우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다.
  - ② 선박재활용업자는 선박재활용 시 선박 또는 선박재활용시설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른다.
  - ③ 선박재활용업자는 해당 선박 또는 선박재활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경우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다.
- 제5조(국제협약과의 관계) 「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」(이하 "국제협약"이라 한다)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, 국제협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국제협약의 요건보다 강화된 요건을 포함하는 경우,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- 제6조(국가의 책무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재활용에 의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 및 제거하고, 선박의 운항 수명 동안

선박 안전, 사람 건강, 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선박재활용에 관한 기술협력, 정보교환, 공동 조사·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에 기여하는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실현을 촉진하여야 한다.
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이 이 법에 준하여 선박재활용을 실시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제2장 선박의 유해물질 관리 및 선박재활용

- 제7조(선박의 유해물질 규제 등) 누구든지 선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설비 등을 설치 및 사용해서는 안된다. 다만,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설치및 사용할 수 있다.
- 제8조(유해물질목록) ① 선박소유자는 제2조제6호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유해물질목록을 선박의

- 모든 운항 기간 동안 적절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선박소유자는 유해물질목록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제9조(선박재활용을 위한 준비 등)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선박을 재활용하여야 한다.
  - 1.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선박재활용시설 또는 국제협약 당사 국인 외국정부가 제16조에 따른 인증과 유사한 행정처분을 한 선 박재활용시설
  - 2. 제19조에 따라 승인된 선박재활용 계획에 기재된 선박재활용시설
  -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- 1. 해당 선박이 선박재활용시설에 들어가기 전 선박 안에 남아 있는 화물 잔류물, 연료유, 폐기물 등의 수량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조치
  - 2. 유조선의 경우 선박재활용시설에 도착하기 전 선박의 화물탱크와 펌프실 등의 출입을 위한 안전, 열작업을 위한 안전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준비
  - 3.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보유
  - 4.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 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모든 선박 관련 정보를 선박재활용업자에게 제공
- 제10조(정기검사)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3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(이하 "정기검사"라 한다)를

받아야 한다.
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③ 선박소유자는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임시검사) ① 선박소유자는 유해물질목록에 영향을 미치는 선박시설 및 설비를 변경·교체 또는 중대한 수리를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(이하 "임시검사"라 한다)를 받아야 한다.
 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최종검사)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의 재활용이 시작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(이하 "최종검사"라 한다)를 받아야 한다.
 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최종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  - ③ 선박소유자는 제19조제8항에 따라 선박재활용업자가 선박재활용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, 제1항에 따른 최종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.
- 제13조(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) ①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의 유효기간 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- ②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의 유효기 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
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유효기간을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
-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기산(起算)하는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한다.
- ⑥ 임시검사에 불합격한 경우,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국제유해 물질목록증서의 효력이 정지된다.
- 제14조(국제협약 당사국 간 증서의 발급) ① 선박소유자가 국제협약 당사국인 외국의 정부로부터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및 국제선박재 활용준비증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경우,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 당사국인 외국의 정부로부터 그 국가의 선박에 대한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및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, 이 법과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 후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게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및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및 국제선박재활

용준비증서는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 부장관이 발급한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및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 로 본다.

- 제15조(선박재활용의 시작 및 완료 통지)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, 선박재활용 계획상 시작일 전 30영업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선박재활용업자는 선박재활용을 위하여 선박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, 계약체결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③ 선박재활용업자는 재활용할 선박에 대한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 서가 발급된 경우,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재활용 의 시작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④ 선박재활용업자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선박의 재활용이 완료된 경우, 14영업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 제3장 선박재활용시설

제16조(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등) ① 선박재활용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재활용하려는 경우,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- ② 선박재활용업자는 제1항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을 신청 하여야 한다.
- ③ 선박재활용업자는 제1항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,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재활용시설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,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고 인증심사에 합격한 선박재활용업자에게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⑤ 선박재활용업자는 제1항의 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,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 재활용시설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.
-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장조사 결과 제2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① 그 밖에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에 관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.
- 제17조(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) ① 제16조제4 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.
  - ② 선박재활용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령의 정하는 시기에 중간인증심사를 받아야

한다.

- ③ 제1항의 유효기간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선박재활용시설 인증 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영업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 박재활용시설 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 갱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선박재활용시설 인증의 취소 등) ① 선박재활용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
  - 1. 피성년후견인
  - 2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
  - 3.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의 인 증, 제17조제3항의 갱신, 제19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
  - 4.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  - 5. 제16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- 6. 근로 안전 또는 환경 보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

- 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
- ② 제1항제2호, 제3호, 제5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선박재활용시설은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.
- ③ 그 밖에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의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해양수산 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9조(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 등) ① 선박재활용업자는 해당 선박의 재활용을 시작하기 30영업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재활용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② 선박재활용업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,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안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, 승인 처리 기간을 10영업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.
  -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는 경우,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.
  -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승인을 한 경우, 선박재활용업자에게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선박재활용 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

다.

-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재활 용 계획의 승인 사실을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⑧ 선박재활용업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선박재활용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,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관으로부터 선박재활용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재활용 계획이 미흡하거나 그 계획대로 실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,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감독

- 제20조(출입검사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및 선박 재활용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현장 등을 확인·점검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, 출입목적·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.
 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물질목록이 제8조에 적합하게 작성 및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,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

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.

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선박을 계속하여 항해에 사용함으로 써 유해물질의 유입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, 그 선박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유입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.
-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선박재활용시설의 운영에 있어 위반 사항이 식별되었거나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그러 한 위반을 통보받은 경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조 사하게 한 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, 해당 선박재활용업자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.
- 제21조(항만국통제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관할수역에 입항하 거나 입항 예정인 총톤수 500톤 이상의 외국선박의 유해물질목록 및 그 밖에 증서가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·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(이하 "항만국통제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  - ② 항만국통제를 위한 확인·점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한정되어야 한다. 다만, 해당 선박이 국제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
  - 1. 유효한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또는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확

인

- 2. 유해물질목록에 대한 검사
- 3. 제1항에 따라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「선박안전법」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선내육안검사 등 필 요한 조치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·점검의 결과 제2항 단서에 따른 명백한 근거가 있거나 유효한 검사증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밀한 점검을 할 수 있다.
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국제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·이동제한·시정요구· 추방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항만국통제의 결과 국제협약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박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,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 등을 발급한 국가의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정밀한 점검·선박의 출항정지·이동제한·시정요구·추방 등의 명령(이하 "시정명령등"이라 한다)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,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등 을 받은 날부터 90영업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

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- ⑦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정명령 등의 위법·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60영업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영업일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⑧ 시정명령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 다만, 「행정소송법」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22조(외국의 항만국통제 등) ① 선박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 국통제 시 선박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되는 국제협약 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박명·총톤수,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수 있다.
- 제23조(보고 의무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대한민국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선박 관련 유해물질등 정보, 선박의 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재활용업

자에게 선박재활용 실시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#### 제5장 보칙

- 제24조(검사 등의 대행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 또는 「선박안전법」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 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- 1.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목록의 검인
  - 2.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, 국제유해물질목록증 서 및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발급 및 검사결과의 표기
  - 3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
  - 4.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
  - 5.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
  - 6.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
  - ② 제1항에 따른 협정 기간은 5년 안으로 하고,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 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(이하 "대행기관"이라 한다)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한다.

- ④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차질에 따른 조치 및 대행업무의 대행취소등 그 감독에 관하여는 「선박안전법」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.
- 제25조(외국정부 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해당 소속 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법령이이 법의 내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외국정부등"이라 한다)이 해당 외국선박에 대하여 행한 선박의 검사 등 업무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 업무로 본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등이 검사 등 업무를 행하고 발급하거나 표시한 증서 또는 합격표시는 이 법에 따라 발급하거나 표시한 것 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에 따른 증서 또는 합격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외국정부등이 발급하거나 표 시한 증서 또는 합격표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26조(수수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 다. 다만, 대행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 기관 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.
  - 1.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목록의 검인 또는 재검인을 신청하는 자
  - 2.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

신청하는 자

- 3.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
- 4.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
- 5.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을 신청하는 자
- 6.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
- 7.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
- ② 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③ 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은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.
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명령등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- 제27조(선박재활용 실태조사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에 보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.
  - 1. 선박재활용시설에 관한 정보
  - 2. 연간 선박재활용의 발생량

- 3. 연간 선박재활용의 처리 실적
- 4. 위임 또는 위탁된 조직이나 검사원과 그의 의무 및 권한
- 5. 법 위반과 관련된 정보
- 6. 선박 또는 선박재활용시설에 취해진 조치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8조(위임 및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(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의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)에게 위임할 수있다.
 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 제6장 벌칙

제2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

-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검 인을 받지 아니한 선박소유자
- 2. 제8조제3항 또는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선박소유자
- 3.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재활용한 선박소유자
- 4.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소유자
- 5.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선박재활용업자
- 6.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승인을 받은 선박재활용업자
- 제30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31조(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)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29조에 도 불구하고 벌금형만을 과한다.
- 제3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제8조제2항에 따라 유해물질목록을 유지 및 관리하지 아니한 선

박소유자

- 2. 제8조제3항에 따라 유해물질목록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
- 3.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
- 4.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으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
- 5.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
- 6.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지 아니한 선박 재활용업자
- 7.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아 외국 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선박소유자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 산부장관이 부과 및 징수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) 현존선은 이 법이 시행된 후 2030년 6월 26일 이전까지 제10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현존선이 2030년 6월 26일 이전에 재활용되는 경우, 재활용되기 전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.

제3조(유해물질목록의 확인) 이 법 시행 전에 국제협약에 따라 유해물질목록의 검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